

원로회의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제37조에 의거 원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원로회의는 원로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회장이 요청하거나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자문 및 조언을 한다.

1. 학회의 기본정책
2. 재산의 처분
3. 담보의 설정 및 해제
4.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사항

제3조(구성·운영) ①원로회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
1. 한국수자원학회 고문 및 참여회원 중 만 70세 이상
2.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수자원분야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70세 이상 정회원을 평의원회에서 추대

②원로회의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,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원로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임명하여 의장의 업무를 보좌케 할 수 있다.

④원로회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.

⑤의장은 원로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4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,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원로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.

②임시회의는 회장이 요청하거나 원로회의 회원 7인 이상이 연명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소집한다.

③회의는 원로회의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다만,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사결의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
④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한 2015.12.11. 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한 2016. 12.9. 부터 시행한다.